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근로감독관 등이 사범경찰관리 직무 수행 중 입은 재해를
위험직무순직공무원 요건에 해당하는 재해로 규정〉
■ 김소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4659호)

2025. 2.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문위원 조문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개정안의 주요내용	3
2. 검토의견	4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소희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4. 10. 11.
3. 회부연월일 : 2024. 10. 1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직무 수행을 하다가 재해를 입어, 그 재해로 인해 사망한 공무원을 위험직무 순직공무원으로 특별히 보상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고용노동부 특별사법경찰관리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근로감독관이 입은 재해의 경우 위험직무순직공무원 대상이 되는 재해에 포함되지 않음. 근로감독관이 현재 19개 노동관계법 위반 사건 수사, 건설·화학공장 및 중대산업사고 현장 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했을 때, 근로감독관이 수행하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역시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직무에 포함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는 재해에 특별사법경찰관리를 수행하는 근로감독관이 범죄의 수사·단속 또는 범인이나 피의자를 체포하다가 입은 재해를 포함하여, 근로감독관의 적극적인 현

장 업무 수행을 지원하고 사고 발생 시 합당한 보상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8호).

Ⅲ. 검토의견

1.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감독관 등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사법경찰관리로서 범죄의 수사·단속 또는 범인이나 피의자를 체포하다가 입은 재해를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는 재해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8호).

현행	개정안
제5조(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는 재해)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는 재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	제5조(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는 재해) ----- ----- ----- -----.
1. ~ 7. (생략)	1. ~ 7. (현행과 같음)
8. 「형사소송법」 제197조 및 제245조의9에 따른 사법경찰관리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법경찰관리가 범죄의 수사·단속 또는 범인이나 피의자를 체포하다가 입은 재해	8. ----- ----- ----- -----제5조까지 및 제6조의2----- -----
9. ~ 11. (생략)	9. ~ 11. (현행과 같음)

2. 검토의견

위험직무순직은 공무원이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재해(災害)를 입고 그 재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로서 일반적인 순직에 비해 유족연금 및 유족보상금을 높은 수준으로 지급하고 있음.

<순직과 위험직무순직 비교>

구분		순직	위험직무순직
대상		· 재직 중 공무로 사망한 경우 · 재직 중 공무상 질병·부상으로 사망한 경우 · 재직 중의 공무상 질병·부상으로 퇴직 후 사망한 경우	·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재해(災害)를 입고 그 재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조 각 호(제1호~제11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상	유족연금	· 해당 공무원의 사망당시 기준 소득월액의 38% + 5~20%	· 해당 공무원의 사망당시 기준 소득월액의 43% + 5~20%
	유족보상금	· 공무원 전체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24배('24년 : 132,480천원)	· 공무원 전체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45배('24년 : 244,840천원)

현행법 제5조는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는 재해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이 중 제8호는 「형사소송법」 제197조 및 제245조의9에 따른 사법경찰관리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법경찰관리(특별사법경찰관리)가 범죄의 수사·단속 또는 범인이나 피의자를 체포하다가 입은 재해를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는 재해로 규정하고 있음.¹⁾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

1)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조(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는 재해)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는 재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

1. 경찰공무원이 다음 각 목의 직무를 수행하다가 입은 재해
가. 범인 또는 피의자의 체포
나.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경비, 주요 인사(人士) 경호 및 대간첩·대테러 작전 수행
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危害)의 방지
라. 긴급신고 처리를 위한 현장 출동, 범죄예방·인명구조·재산보호 등을 위한 순찰 활동, 해양오염 확산 방지
2. 소방공무원이 다음 각 목의 직무를 수행하다가 입은 재해
가. 재난·재해 현장에서의 화재진압, 인명구조·구급작업 또는 이를 위한 지원활동(그 업무수행을 위한 긴급한 출동·복귀 및 부수활동을 포함한다)
나. 위험 제거를 위한 생활안전활동
3. 대통령경호처 직원이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 업무를 수행하다가 입은 재해
4. 국가정보원 직원이 다음 각 목의 직무를 수행하다가 입은 재해
가.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1항제3호·제4호에 따른 직무
나. 간첩 체포 및 방첩 활동
다. 분쟁지역 등에서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 등 보안정보 수집
5. 교도관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호(戒護) 업무를 수행하다가 입은 재해
6. 산림항공기 조종사 및 그와 동승(同乘)한 근무자가 현장에서 산불예방·진화작업, 산림병해충 예찰·방제 작업, 인명구조, 재난·재해 현장에서의 구난행위(그 업무수행을 위한 긴급한 출동·복귀 및 부수활동을 포함한다)를 하다가 입은 재해
7. 「수산업법」 제69조에 따른 어업감독 공무원이 어업지도선 및 단속정에 승선하여 불법어업 지도·단속(그 업무수행을 위한 긴급한 출동·복귀 및 부수활동을 포함한다)을 하다가 입은 재해
8. 「형사소송법」 제197조 및 제245조의9에 따른 사법경찰관리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법경찰관리가 범죄의 수사·단속 또는 범인이나 피의자를 체포하다가 입은 재해
9. 공무원이 다음 각 목의 활동 중 입은 재해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재해 현장에 투입되어 수행한 인명구조·진화·수해방지 또는 구난(그 업무 수행을 위한 긴급한 출동·복귀 및 부수활동을 포함한다)
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의 치료 또는 감염병의 확산 방지
다.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불 진화
라. 국외에서 천재지변·전쟁·교전·폭동·납치·테러·감염병, 그 밖의 위난상황 발생 시 대한민국 국민의 보호 또는 사고 수습
마.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고대비물질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취급
10. 공무원이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공무원수행과 관련하여 보복성 범죄·테러 등으로 입은 재해 또는 실기·실습 훈련 중 입은 재해
11. 그 밖에 제6조에 따른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가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재해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가 입은 재해

할 자(특별사법경찰관리)와 그 직무의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법률로서,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서 각각 교도소장 등, 산림 보호에 종사하는 공무원,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하는 공무원에 대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근거를 두고 있으며, 제6조의2에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감독관, 지방고용노동청 등에 근무하며 근로감독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8급·9급 국가공무원으로서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명한 자, 「선원법」에 따른 선원근로감독관(이하 “근로감독관등”)에 대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근거를 두고 있음.²⁾³⁾

2)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의2(근로감독관 등) ①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감독관은 그의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근로기준법」
2. 「최저임금법」
3. 「남녀고용평등법」
4. 「임금채권보장법」
5. 「산업안전보건법」
6.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8.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9.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10. 「근로복지기본법」
11.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12.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14.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15.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6.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17.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18.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6조 및 제7조만 해당한다)
19.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27조제3항제3호만 해당한다)
- ② 지방고용노동청, 지방고용노동청 지청 및 그 출장소에 근무하며 근로감독, 노사협력, 산업안전, 근로여성 보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8급·9급의 국가공무원 중 그 소속 관서의 장의 추천에 의하여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자는 제1항의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 ③ 「선원법」에 따른 선원근로감독관은 그의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선박소유자와 선원

개정안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법경찰관리 외에 근로감독관등이 동법 제6조의2에 따라 사법경찰관리로서 범죄의 수사·단속 또는 범인이나 피의자를 체포하다가 입은 재해를 위험직무 순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는 재해로 규정하려는 것임.⁴⁾

현행법 제5조제8호는 특별사법경찰관리와 관련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법경찰관리가 범죄 수사 등 직무를 수행하다가 입은 재해만을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는 재해로 규정하고 있는데, 동법 제6조의2에 따라 근로감독관등이 사법경찰관리로서 범죄 수사 등 직무를 수행하다가 입은 재해를 이와 구별하여 법적으로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는 재해에서 제외할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⁵⁾

또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근로감독관등이 사법경찰관리로서 수행하는 직무는 범죄의 수사 등으로 다른 사법경찰관리가 수행하는 직무와

의 「선원법」 또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3)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감독관, 지방고용노동청 등에 근무하며 근로감독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8급·9급 국가공무원으로서 지방검찰청검사가 지명한 자, 「선원법」에 따른 선원근로감독관은 모두 공무원 신분으로서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함.

4) 근로감독관은 고용노동부 소속으로 2024.10월 기준 3,163명(정원)이며, 선원근로감독관은 해양수산부 소속으로 2024.10월 기준 51명(정원)임.

5)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상 공무원 신분인 특별사법경찰관리 중 근로감독관등을 제외하고는 모두 사법경찰관리로서 범죄 수사 등 직무를 수행하다가 입은 재해가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는 재해로 명시되어 있음.

본질적으로 동일하고, 사법경찰관리로서 그 직무의 범위와 수사 관
할에 속하는 범죄의 내용과 성질, 위험성 등 기준에 따라 법적으로
다르게 취급할 만한 객관적이고 명확한 사유도 찾기 어려운 것으로
보임.⁶⁾

현행법은 제5조제11호에서 “그 밖에 제6조에 따른 공무원재해보
상심의회가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재해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위
험한 직무를 수행하다가 입은 재해”를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
에 해당하는 재해로 인정할 수 있도록 보충적 규정을 두고 있어 개
정 실익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음.

그러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감독관등의 사법경찰관리로서의
지위 및 그 직무 수행에 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고 다른 사법경찰
관리와 동일하게 범죄 수사 등 직무를 수행하다가 재해를 입은 경우
를 요건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근로감독관등의 위험직무
순직공무원 인정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
이는 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근로감독관등이 사법경찰관리로서 범죄의 수사·단
속 또는 범인이나 피의자를 체포하다가 입은 재해”를 위험직무순직

6) 근로감독관의 경우 「근로기준법」 등 19개 노동관계법 위반 사건 수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건
설·화학공장 및 중대산업사고 현장 등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선원근로감독관의 경우도 「근
로기준법」 및 그 밖의 선원근로관계 법령에 따른 서류의 제출, 심문 등 수사 업무를 수행하면
서 근로감독관과 같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는 재해로 규정하려는 개정안은 입법적 타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봄.

인사혁신처는 위험직무순직 요건에 근로감독관등이 범죄의 수사·단속 또는 범인이나 피의자를 체포하다가 입은 재해를 포함시키려는 개정안은 해당 직무의 위험성, 현행 법령에서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는 다른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문 의 처
02)6788-5342